

속초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5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5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항을 상위법규에 맞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 주 요 골 자

-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 개정 (안 제1조 참조)

"하수도법 제21조"를 "하수도법 제18조"로 개정

3. 참 고 사 항

- 강원 법규 02124 ~ 98 ('93.3.24) 호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—— 별 첨
-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

속초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하수도법 제21조의" 를 "하수도법 제18조의"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,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 1조 (목적)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 공공하수도 (이하 "하수도" 라 한다)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 1조 (목적)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 공공하수도 (이하 "하수도" 라 한다)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